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5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
발 의 자 : 임종국, 권영희, 김기대,
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
김태수, 김희걸, 노승재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송도호, 송아량,
양민규, 이광호, 이병도,
이영실, 이정인, 장상기,
최 선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지털재단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디지털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(안 제1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3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생략)</p> <p>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~ 2. (생략)</p>	<p>제17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(생략)</p> <p>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~ 2. (생략)</p>